경제관계장관회의 (공개) 역동경제로 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#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

2025. 5. 1

관계부처합동

###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(요약)

#### 1. 추진 배경

- □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(매출액) 택일주의에 따른 中企 범위기준이 피터팬 증후군 초래 유인이 있어 **'15년 매출액 단일 기준\***으로 **전면 개편** 
  - \* [종전] 업종별 근로자 수 50~300인 이하, 자본금 30~80억원 이하 [현행] (中기업) 44개 업종별 400~1,500억원 이하 / (小기업) 43개 업종별 10~120억원 이하
- □ 지난 10년간 큰 폭의 물가상승\*,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에 따른 생산원가 급증으로 **성장이 아닌 단순 매출증가로** 中小**졸업**사례 발생 \* ('15년 대비 '24년) GDP 디플레이터 +17% 생산자물가지수 +26%, 수입물가지수 +42%
- □ 전문가 TF<sup>\*</sup>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의 **원칙과 기준을 수립**하고 **중소기업계 의견수렴**<sup>\*\*</sup>을 거쳐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
  - \* KDI,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, 연구원 전문가 참여('24.5월~)
  - \*\* 중기중앙회 등 中企 협·단체, 업종별 조합·단체 대상 의견수렴 14차례 시행('25.1~3월)

### 2. 조정 원칙 및 기준

- ◇ 조정원칙 ①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원활한 작동 ② 보호·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한정 ◇ 단계별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2단계 1단계 3단계 업종 내 기업분포 및 업종별 매출기준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현행 매출기준 적정성 검토 조정 타당성 검토 합리적 조정 ▶업종별 경상성장률, ▶업종별 물가상승 정도,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▶업종 내 상위기업군 분포와 최근 中企 졸업률 추이 변화 현행 매출기준 상한 비교 ▶전체 매출구간 제도의 일관성, ▶업황, 업종별 특수성 유무 안정성을 고려한 조정
- ① 업종 내 기업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
  - 업종 내 **상위기업 군의 분포**에 비추어 **현행** 중기업·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 **매출기준 상한의 과대/과소 설정여부** 점검

#### ②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

- **이플레이션의 정도와 영향**, 업종별 **중소기업 졸업률 추이**의 변화 분석
- 매출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,
   업황, 업종의 특수성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
- ③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

### 3.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

- □ [1단계]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
  - 매출기준 상한이 업종 내 상위 1%(소기업 30%) 기업 매출보다 큰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어 현행 유지
    - \* 업종 내 상위 기업의 매출보다 中企 매출상한이 낮은 경우만 조정필요성을 검토
      - ⇒ 중기업 44개 업종 中 27개 / 소기업 43개 업종 中 17개 조정검토 필요

#### ② [2단계]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

- 물가 상승<sup>\*</sup>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률 추이 변화 분석을 통해 **실질** 성장 없는 단순 물가 상승으로 인해 中企 졸업할 가능성을 검토
  - \* '15~'24년 GDP 디플레이터(미국 中企 범위기준 조정 시 채택지표) 활용
-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**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수성**도 함께 점검
  - \* (例) 최근 원가가 급증한 '건설업' 및 '1차금속 제조업', 美 품목별 관세 부과 업종 등
    - ⇒ 중기업 27개 업종 中 16개 / 소기업 17개 업종 中 12개 조정

### ③ [3단계]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

○ **업종별 물가상승률**, 매출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**경상성장률**을 고려하되, **제도 일관성, 적용 편의성**을 고려하여 매출구간 신설을 최소화

#### <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>

#### [중기업 기준]

#### [소기업 기준]

현행 (5개 구간) 개편 (9개 구간)

현행 (5개 구간)	개편 (7개 구간)		
	<b>1,800억원</b> 이하 <sup>신설</sup>		
4 = 0.04 0141	1,500억원 이하		
<b>1,500억원</b> 이하	1,20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		
1,000억원 이하	1,000억원 이하		
800억원 이하	800억원 이하		
600억원 이하	600억원 이하		
<b>400억원</b> 이하	<b>400억원</b> 이하		

<b>140억원</b> 이하 <sup>신설</sup>
120억원 이하
10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
80억원 이하
6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
50억원 이하
4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
30억원 이하
<b>15억원</b> 이하 <sup>신설</sup>

#### 4. 기대효과 :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견고화

- □ 중기업 16개, 소기업 12개 업종의 매출상한 조정을 통해 **단순 물가** 상승에 따른 中企 지위상실 가능성 차단으로 소규모 기업 성장 촉진
  - \* **中企 804만개** 중 매출기준 **상향업종 해당 기업 573만개**(중기업 6.3, 소기업 566.7만개)는 세제감면, 공공조달,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혜 기대

#### < 中企 범위 기준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>

구분	
중기업	
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	

현행				
총 업종	기업 수(A)			
44개	12.3만개			
43개	791.9만개			

개편(안)			
조정 업종	기업 수(B)	비중(B/A)	
16개	6.3만개	50.9%	
12개	566.7만개	71.5%	

- □ 美의 **관세강화**\*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애로, 납품단가 인하 부담,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\*\*로 어려움을 겪는 中企에 도움이 될 전망
  - \* 美 관세예고 : (품목별) 자동차·철강·알루미늄 25% / (기본+한국 상호관세) 10(발효)+15%(90일 유예)
  - \*\*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여건 악화 전망 53.4%('25.4, 수출 제조기업 설문, 무역協)

#### 5. 향후 계획

□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(5월) →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
 시스템 개편(~9월) → 제도 시행(9월 잠정)

## 순 서

Ⅰ. 추진 배경1
Ⅱ. 중소기업 범위조정의 원칙 및 기준 2
Ⅲ.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3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6
[#17] 4 <b>5 4 7101 MIX HIQ 11</b>
[참고] 1.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안 세부내용 …8
2. 중소기업 기준 개요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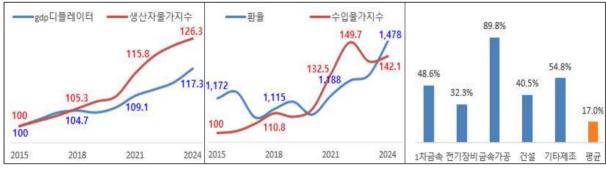
### Ⅰ. 추진 배경

- □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(매출액) 택일주의에 따른 中企 범위기준이 피터팬 증후군 초래 유인\*이 있어 '15년 매출액 단일 기준\*\*으로 전면 개편
  - \* (사례) 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급증해도 자본금 80억원 이하 유지시 중소기업으로 잔류
  - \*\* (중기업) 44개 업종별 400~1,500억원 이하 / (소기업) 43개 업종별 10~120억원 이하
  - 경영환경, 업황 등에 따른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을 위해 **5년마다** 적정성 검토하나 '15년 이후 **10년간 업종별 매출 기준 유지** 
    - \* (미국 조정사례) 최근 '22년, '19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인플레이션율 반영
- □ 지난 10년간 큰 폭의 물가상승\* 등으로 생산원가가 급증하여 **실제** 성장이 아닌 단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
  - \* ('15년 대비 '24년) GDP 디플레이터 +17%, 생산자물가지수 +26%, 수입물가지수 +42%



■ 매출의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고, 마진은 크지 않은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액만 늘어났음에도 중견기업이 되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불합리





- 관세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,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
   악화\* 등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 전망
  - \*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여건 악화 전망 53.4% ('25.4, 수출 제조기업 설문, 무역協)
- □ 전문가 TF<sup>\*</sup>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의 **원칙과 기준을 수립**하고 **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**<sup>\*\*</sup>을 거쳐 중소기업 **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** 
  - \* KDI,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, 연구원 전문가 참여('24.5월~)
  - \*\* 중기중앙회 등 中企 협·단체, 업종별 조합·단체 대상 의견수렴 14차례 시행('25.1~3월)

### Ⅱ. 중소기업 범위 조정 원칙 및 기준

### 1 조정 원칙

#### ①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원활한 작동

○ 소기업 → 중기업 → 대·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**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위활하게**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군 간 합리적 경계 설정

#### ② 보호·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한정

○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의 기업을 포함하여 성장의 안정성을 높이고,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제외하여 지원의 형평성 강화

### 2 조정 기준

#### ① 업종 내 기업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

○ 업종 내 상위기업 군의 분포에 비추어 현행 중기업·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 매출기준 상한의 과대/과소 설정여부 점검

#### ②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

- **인플레이션**의 정도와 영향, 업종별 중소기업 졸업률 추이의 변화 분석
- 매출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,
   업황, 업종의 특수성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

#### ③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

< 단계별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>

1단계		2단계		3단계
업종 내 기업분포 및 현행 매출기준 적정성 검토		업종별 매출기준 조정 타당성 검토		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
▶업종 내 상위기업군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 상한 비교	$\Rightarrow$	▶업종별 물가상승 정도, 최근 中企 졸업률 추이 변화 ▶업황, 업종별 특수성 유무	$\Box$	▶업종별 물가상승률, 경상성장률 등의 반영 ▶전체 매출구간 제도의 일관성, 안정성을 고려한 조정

### Ⅲ.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

### 1 [1단계]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

- 중기업은 **업종별 상위 1%**\* 기업 매출, 소기업은 상위 30% 기업매출을 현행 매출상한 기준과 비교하여 이보다 낮은 경우만 조정여부를 검토
  - \* ('18~'22년) 全 기업 중 대·중견기업 분포 상위 1.28% / 중기업 이상 분포 30.2%
- 매출기준 상한이 업종 內 상위 1%(소기업 30%) 기업보다 큰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어 현행 유지
  - \* 다만, 평균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업종의 경우, 인플레이션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적용 제외
  - ⇒ 중기업 44개 업종 中 27개 / 소기업 43개 업종 中 17개 조정검토 필요

### 2 [2단계]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

- ① 인플레이션 정도 및 영향
  - GDP 디플레이터 활용하여 '15년 매출액 기준 개편 이후 '24년말 현재까지 업종별 물가 상승 여부를 분석 (미국 채택 방식)
  - 물가 상승 업종의 중소기업 졸업률 추이 변화 분석을 통해, 실질
     성장이 아닌 단순 매출상승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할 가능성 검토

#### ② 업종별 특수성

- 업계 의견수렴<sup>\*</sup>을 통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
  - \*[例] 건설업 : 코로나 팬데믹, 러-우 전쟁을 거치며 시멘트, 골재, 레미콘,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하여 '20년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30%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원가 급상승
    - **자동차제조업** : 美 품목별 관세 25%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,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부가가치 창출은 그대로이나 매출규모만 커지는 현상 발생
    - 1차금속 제조업 : 알루미늄, 동,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(LME)이 '15년 이후 60% 이상 상승, Al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로 금속 가격은 더욱 상승 전망
  - ⇒ 중기업 27개 업종 中 16개 / 소기업 17개 업종 中 12개 조정

#### 3 [3단계]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

- [] **업종별 물가상승률, 경상성장률**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
  - o **물가상승률**을 감안하되,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 성장률\*을 함께 고려하여 매출 기준 조정
    - \*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업종별 매출성장 지표(업종별 명목GDP 성장률과 동일) 나 업종 성장률보다 매출기준 증가율이 과도하게 클 경우 中企 과다 포함될 우려 차단
- ② 제도 일관성 및 여타 지원제도\*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출구간 신설·변경을 최소화하여 적용의 편의성 도모
  - \* 중소기업자·소상공인 확인업무, 조세특례제도 등

#### <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>

#### [중기업 기준]

[소기업 기준]

개편

140억원 이하<sup>신설</sup>

120억원 이하

100억원 이하<sup>신설</sup>

80억원 이하

60억원 이하<sup>신설</sup>

50억원 이하

40억원 이하<sup>신설</sup>

30억원 이하

15억원 이하<sup>신설</sup>

1 000 업 이 취실	
1,80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	N <del>+</del> 1
1,500억원 이하 120억원 (	기아
1,500억원 이하 1,200억원 이하 <sup>신설</sup> 80억원 0	하
1,000억원 이하 1,000억원 이하 50억원 0	나
8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	191
6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30억원 0	하
4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10억원 0	하

※ <b>5구간 신설</b> (15억원 이하, 40억원 이하, 60억원 이하,
100억원 이하, 140억원 이하 )
<b>1구간 폐지</b> (10억원 이하)

- ※ **2구간 신설**(1,200억원 이하, 1,800억원 이하)
- ◆ [중기업 기준] 5개 구간 400~1,500억원 → 7개 구간 400~1,800억원
- [소기업 기준] 5개 구간 10~120억원 → 9개 구간 15~140억원

### ────< 중기업/소기업 범위조정 업종 >──

□ 중기업 범위 상향업종 : 44개 중 16개

(단위 : 억원)

표준산업분류	중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		개편안
C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
C24	1차 금속 제조업	1,500	1,800
C28	전기장비 제조업		
C10	식료품 제조업		
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	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	
C29	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1,000	1,200
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
C31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	
F	건설업		
G	도매 및 소매업		
C33	그 밖의 제품 제조업		
Н	운수 및 창고업	800	1,000
J	정보통신업		
N	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 제외)	600	800

□ 소기업 범위 상향업종 : 43개 중 12개

(단위 : 억원)

표준산업분류	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	현행	개편안
C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140
C24	1차 금속 제조업	120	140
Н	운수 및 창고업	90	100
K	금융 및 보험업	80	100
G	도매 및 소매업	50	60
Е	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20	40
L	부동산업	30	40
C34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	
I	숙박 및 음식점업		
Р	교육 서비스업	10	15
Q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
S	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	

### 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### 1 기대효과

- □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견고화
  - 중기업 16개, 소기업 12개 업종의 매출상한 조정을 통해 **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** 中企 지위상실 가능성 차단으로 소규모 기업 성장 촉진
    - 중소기업 804만개 중 매출기준 상향업종에 해당하는 약 573만개\* (71%) 기업은 세제감면, 공공조달,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혜 기대
    - \* 중기업 6.3만개, 소기업 566.7만개

#### < 中企 범위 기준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>

	구분	
	중기업	
(:	소기업 소상공인 포함)	

현행		
총 업종	기업 수(A)	
44개 12.3만개		
43개	791.9만개	

개편(안)			
조정 업종	기업 수(B)	비중(B/A)	
16개	6.3만개	50.9%	
12개	566.7만개	71.5%	

- 美의 **관세강화**\*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애로, 납품단가 인하 부담, 글로벌 워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中企에 도움이 될 전망
  - \* 美 관세예고 : (품목별) 자동차·철강·알루미늄 25% / (기본+한국 상호관세) 10(발효)+15%(90일 유예)
- ② 中企 범위 조정의 합리적 원칙·기준 수립으로 예측가능성 제고
  - 중소기업계 합의를 거쳐 마련된 中企 범위 조정 기준을 통해 5년 마다 시행되는 변경검토에서 **제도 예측가능성, 수용성** 확보

### 2 향후계획

- □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개정안 입법예고 : 5월
- □ 국무회의 상정 : 7월(잠정)
- □ 중소기업 온라인 확인시스템 개편 : ~9월
- □ 시행 :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: 9월(잠정)

## 참고 1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안 세부 내용

#### < 중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개정안) >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개편 후	개편 전
1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 1차 금속 제조업	C24	평균매출액등	
3 전기장비 제조업	C28	1,800억원 이하	평균매출액등
4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ᆑᄀᆒᄎᅄᄃ	1,500억원 이하
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평균매출액등	
6. 가구 제조업	C32	1,500억원 이하	
7. 식료품 제조업	C10		
8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
9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ᆑᄀᆒᄎᅅᄃ	
11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평균매출액등 1,200억원 이하	
12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1,200 학원 이야	
13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14. 건설업	F		
15. 도매 및 소매업	G		평균매출액등
16. 농업, 임업 및 어업	Α		1,000억원 이하
17. 광업	В		
18. 담배 제조업	C12		
19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	
20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	
2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	
22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1,000억원 이하	
23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24. 수도업	E36		
25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6. 운수 및 창고업	Н		
27. 정보통신업	J		
28. 음료 제조업	C11		ᆑᄀᇜᄎ애ᄃ
29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30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ᆑᄀᇜᄎᅄᄃ	000극편 이야
31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평균매출액등	
3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800억원 이하	
3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 제외)	E (E36 제외)		
34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 제외)	N (N76 제외)		
35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М	ᆑᄀᆒᄎᅅᄃ	평균매출액등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평균매출액등	60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600억원 이하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40. 금융 및 보험업	K		
41. 숙박 및 음식점업	l	ᆑᄀᆒᄎᄱᄃ	ᆝᇜᄀᆒᄎᅄᇋᆝ
42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	평균매출액등
43. 임대업	N76	400억원 이하   400억원 이하	
44. 교육 서비스업	Р		

### <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3] 개정안) >
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개편 후	개편 전
2.1차 금속 제조업	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	-
4. 응료 제조업 5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2. 1차 금속 제조업	C24	-	
5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. 식료품 제조업	C10		
6. 가축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C15           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인약품 제조업         C21          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C21          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         C25          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C26          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C28          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C30           15. 가구 제조입         C32          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D           17. 수도업         E36           18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H           19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K           20. 농업임업 및 어업         A           21. 광업         B           22. 담배 제조업         C12           23. 섬유제품 제조업(기구 제조업 제외)         C13          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기구 제조업 제외)         C16           25. 필프 중이 및 총이제품 제조업         C17           26. 인쇄 및 기록내체 복제업         C18          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C22           28. 그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C33           31. 건설업         F          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G           33. 정보통신업         J           33. 정보통신업         J          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        E (E36 제외)           35. 부동산업         L          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		C11		
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   C20   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1   70   C23   T20   C23   T20   C25   T20	5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. 전기장비 제조업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. 가구 제조업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. 수도업 18. 요수 및 창고업 18. 요수 및 장고업 19. 금융 및 보험업 20. 농업임업 및 어업 21. 광업 22. 담배 제조업 23. 설유제품 제조업(기구 제조업 제외)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기구 제조업 제외) 25. 별표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. 건설업 52. 도매 및 소매업 32. 도매 및 소매업 33. 정보통신업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35. 부동산업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. 사업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. 에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. 숙박 및 음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. 교육 서비스업 44. 교육 서비스업 4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. 소박 및 음식점업 47. 교육 서비스업 48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. 교육 서비스업 4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. 숙박 및 음식점업 47. 교육 서비스업 47. 교육 서비스업 48. 교육 서비스업 48. 교육 서비스업 49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. 숙박 및 음식점업 47. 교육 서비스업 47. 교육 서비스업 48. 교육 서비스업 48. 교육 서비스업 49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. 숙박 및 유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8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9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6 12. 전기장비 제조업 C30 15. 가구 제조업 C30 15. 가구 제조업 C30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T17. 수도업 E36 18. 운수 및 창고업 H B라내출액등 100억원 이하 19. 금융 및 보험업 C1. 광업 C2. 담배 제조업 C2. 당행 B C2. 담배 제조업 C2. 당행 C12 C2. 검사제물 제조업(기구 제조업 제외) C3. 절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. 모두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. 임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. 그 밖의 요송장비 제조업 C3. 그 밖의 요송장비 제조업 C3. 그 밖의 모송장비 제조업 C3. 그 밖의 제로 제조업 C3. 그 밖의 전상하기 및 시계 제조업 C3. 그 밖의 전상하기 및 사례 제조업 C3. 그 밖의 전상이 제조업 C3. 그 밖의 제로 제조업 C3. 그 밖의 제조업 C3. 그 밖의 제조업 C4. 그 무대로 제조업 C4. 그 무대로 제조업 C4. 그 무대로 제조업 C4. 그 무대로 제조업 C5. 전체	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평균매출액등
10. 금복가당세품 세조업 (의거 및 가구 세조업 세외)   C.25  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C26  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 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0   C32   15. 가구 제조업   C32   C33   C32   C33   C33   C33   C33   C32   C33		C23	· 평그매츠애드	120억원 이하
11. 전사구등 (급유단), 당승, 음당 및 동산당이 세소입	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120 국권 이야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5. 가구 제조업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. 수도업 18. 윤수 및 창고업 19. 금융 및 보험업 20. 농업,임업 및 어업 21. 광업 22. 담배 제조업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 25. 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7. 고무제품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. 고무제품 및 필라스틱제품 제조업 27. 고무제품 및 필라스틱제품 제조업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. 건설업 32. 도매 및 소매업 33. 정보통신업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35. 부동산업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. 숙박 및 음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. 교육 서비스업 4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. 전문 내회복지 서비스업 47. 교육 서비스업 48.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8.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8.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		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. 수도입 E36 18.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.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. 농업,임업 및 어업 A 21. 광업 B 22. 담배 제조업 C12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 C13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 C15 25. 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. 그 밖의 전을 제조업 C31 31. 건설업 F 32. 도매 및 소매업 G G 평균매출액등 33. 정보통신업 F 33. 정보통신업 J 등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5. 부동산업 L 영균대설액등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명균매출액등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명균매출액등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명균매출액등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. 숙박 및 음식점업 I 명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76. 전원 이하 7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명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78. 여울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명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78. 생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79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P 명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				
17. 수도업				
18. 운수 및 창고업				
19. 금융 및 보험업	17. 수도업	E36		
20. 농업 일업 및 어업 A 21. 광업 22. 담배 제조업 22. 담배 제조업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 C16 25. 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7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. 그 밖의 온송장비 제조업 C31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. 건설업 F  32. 도매 및 소매업 G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명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B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R 30억원 이하 대출액등 15억원 이하 명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R 명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명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R 명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	18. 운수 및 창고업	Н	평균매출액등	
21. 광업	19. 금융 및 보험업	K	100억원 이하	
22. 담배 제조업	20. 농업,임업 및 어업	Α	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	В	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         C16           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C17           26. 인쇄 및 기록대체 복제업         C18          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C22          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C31          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C33           31. 건설업         F          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G           33. 정보통신업         J          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        E (E36 제외)           35. 부동산업         L          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M          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N          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R          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C34          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I          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P          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Q	22. 담배 제조업	C12	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. 건설업 32. 도매 및 소매업 32. 도매 및 소매업 33. 정보통신업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35. 부동산업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. 숙박 및 음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 41. 교육 서비스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	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	
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평균매출액등	80억원 이하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C18	80억원 이하	
29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		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1. 건설업F32.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				
31. 건설업F32.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33. 정보통신업J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35. 부동산업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M R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40. 숙박 및 음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I B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				
32.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명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.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.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.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명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				
32. 모매 및 조매합	31. 건설업	F		
33. 정보통신업 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5. 부동산업 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41. 교육 서비스업 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	32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성모동신업	32. 2	,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 E (E36 제외) 평균매출액등 35.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.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.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	33. 정보통신업	J		5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L성인역원 이하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30억원 이하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40. 숙박 및 음식점업I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41. 교육 서비스업P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	35. 0-011		50억원 이하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40. 숙박 및 음식점업I41. 교육 서비스업P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	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E (E36 제외)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N R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40. 숙박 및 음식점업I41. 교육 서비스업P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	35. 부동산업	L	40억원 이하	평균매출액등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N R평균매출액증 30억원 이하40. 숙박 및 음식점업 41. 교육 서비스업I P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P Q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	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М	ᆑᄀᆒᄎᅄᄃ	1
38. 예술, 스포스 및 여가 판단 서미스법     R      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C34      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I       41. 교육 서비스업     P      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Q         평균매출액등       15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	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I41. 교육 서비스업P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  명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30억권 이야	
41. 교육 서비스업P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	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41. 교육 서비스업     P      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Q	40. 숙박 및 음식점업	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	41. 교육 서비스업	Р		
	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- 13박권 이야	IU뛰면 이야 
	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## 참고 2 현행 중소기업 기준 개요

구분		중소기업			
		중기업	소기업	소상공인	
근	거 법령	「중소기업기본법」	「중소기업기본법」	「소상공인기본법」	
7	준조건	4개 모두 충족(AND)	4개 모두 충족(AND)	5개 모두 충족(AND)	
	규모	<b>매출액</b> 규모기준 이하 (업종별 400~1,500억원)	<b>매출액</b> 규모기준 이하 (업종별 10~120억원)	좌동	
		<b>자산총액</b> 5천억원 미만	좌동	좌동	
		-	-	<b>상시근로자수</b> 5인/10인 미만	
	독립성	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규모기준 이하	좌동	좌동	
		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종속기업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(자산 총액 5조원 이상) 소속회사가 아닐 것	좌동	좌동	